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. 6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5월 26일

나. 발 의 자: 이성수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6월 8일

라. 상정일자: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23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도시국장 김일호)

가. 제안이유

-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,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경로당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·개선에 대한 구 분담률을 상향하여,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'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'에 대한 구 분담률을 40%에서 60%로 상향함 (별표 1 제1호가목3)

-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'경로당 보수'에 대한 구 분담률을 50%에서 70%로 상향함 (별표 1 제1호나목3)
-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'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·개선'에 대한 구 분담률을 50%에서 60%로 상향함 (별표 1 제1호나목6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경진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,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경로당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·개선에 대한 구 분담률을 상향하여,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별표1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 ‘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’에 대한 구 분담률을 40%에서 60%로 상향하였고,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중 ‘경로당의 보수’와 ‘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·개선’에 대한 구 분담률을 각각 50%에서 70%, 50%에서 60%로 상향함.

○ 검토 결과

-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·복리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비용 중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·노인·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 분담률을 상향하는 것은 일부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의 이용자들에게 편의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의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성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6. .

발 의 자 : 이성수、이순우、우경란
、유승용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공동주택 지원대상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어린이 놀이터
유지보수,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경로당 보수와 장애인
편의시설의 설치·개선에 대한 구 분담률을 상향하여, 사회적 약자
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인근 주민에게
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에 대한 구 분담률을 40%
에서 60%로 상향함 (별표 1 제1호가목3)
- 나.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경로
당 보수에 대한 구 분담률을 50%에서 70%로 상향함
(별표 1 제1호나목3)

다.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·개선에 대한 구 분담률을 50%에서 60%로 상향함 (별표 1 제1호나목6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3. 6. 9. ~ 2023. 6. 14.)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지 원 사 업	구분담률	공동주택 분담률
3.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	60	40

별표 1 제1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지 원 사 업	구분담률	공동주택 분담률
3. 경로당의 보수	70	30

별표 1 제1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지 원 사 업	구분담률	공동주택 분담률
6.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·개선	60	40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별표1]

현행			개정안		
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			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		
1.지원비율			1.지원비율		
가. 공동체 활성화 사업			가. 공동체 활성화 사업		
지원사업	구 분담률	공동주택 분담률	지원사업	구 분담률	공동주택 분담률
3.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	40	60	3.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	60	40
나.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			나.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		
지원사업	구 분담률	공동주택 분담률	지원사업	구 분담률	공동주택 분담률
3. 경로당의 보수	50	50	3. 경로당의 보수	70	30
6.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·개선	50	50	6.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·개선	60	40